

GEA KOREA

(주) 수리부속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거래조건

(국내거래)

용어정의

용어	의미
계약	당사자들간 장비, 부품 및 자재 (및/또는 관련 현장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계약으로서, (i)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합의, 또는 공급인의 청약서 및 이에 대한 매수인의 승낙서, 또는 매수인의 주문서 및 이에 대한 공급인의 승낙서, (ii) 본 거래조건, (iii) 서면 합의된 수정 및 추가사항 등 위 문서들에 대한 부록 일체로 구성된다.
공급인	GEA 계열회사 또는 GEA가 대한민국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설립한 회사로서 매수인에게 공급되는 공급대상에 관하여 공급인의 청약을 발행하거나 매수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자.
공급인의 청약	공급대상에 대한 공급인의 견적 또는 제안.
계약금액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비용	간접비용, 보험비용, 금융비용 및 유사 요금과 합리적인 수준의 이익 등 공급인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 일체; 비용 산정 시 공급인의 인건비는 공급인이 제시한 정기 요율을 기준으로 하되 공급인이 정기 요율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작업이 수행될 당시 통용되는 요율을 기준으로 한다.
일(日)	역일(曆日).
하자	위험이전 당시 공급인의 장비의 제작기술상 또는 물질상 하자나 누락 또는 서류미비 또는 현장서비스에 상업상 합리적인 수준의 기술과 주의가 결여된 경우.
수출제한상황	수출관리규제로 인하여 수출허가가 요구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공급인의 이행이 지연, 금지되거나, 합리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
수출관리규제	관련 국내 및 국제법령, 규정, 명령, 수출금지조치, 상품의 교역을 금지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 행정조치 또는 결의 일체.
수출허가	수출관리규제에 따라 공급인이 받아야 할 본 계약에 따른 상품 공급에 대한 감독당국의 허가나 이에 준하는 공식 승인.
불가항력	전쟁이나 테러행위, 폭동, 내란, 수출금지령, 수입/수출 허가의 지연 또는 거부, 전염병, 파업, 화재, 운송 또는 통관 지연, 공급인 또는 그 하도급인이 그 귀책사유없이 취업허가나 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진, 홍수, 허리케인, 태풍, 폭풍 기타 천재지변 또는 정부 조치 또는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그 밖의 상황.
~을 포함함, ~등	~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인코텀스 (Incoterms)	공급인의 청약일 당시 (파리) 국제상공회의소에 의한 인코텀® 이라는 명칭으로 발행된 일련의 사전 정의된 현행 상업계약조건. 관련 인코텀 조항에 의하여 규정되거나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용어나 표현은 본 거래조건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나, 인코텀 조항과 본 거래조건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우선한다.
매수인	계약상 공급인의 고객.
매수인의 이행사항	본 거래조건 또는 공급인의 청약서에 매수인(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를 포함)의 책임으로 규정된 작업 등 공급인의 공급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공급대상과 관련된 (구조물, 설비, 기록 및 서비스 등) 작업 일체.
공급일정	계약서에 명시된 공급대상에 대한 공급계획. 본 거래조건 제5조 제5항에 따라 수정 가능.
공급대상	계약서에 공급인의 책임사항으로 명시된 장비, 서류 및 (현장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서비스.
현장	공급대상이 제공되는 장소.
현장서비스	계약서에 공급인의 책임사항으로 명시된 공급대상의 설치, 건립, 시운전 및 인수시험 또는 그 감독행위 등 공급인이 현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거래조건	본 수리부속 공급 및 현장서비스 거래조건.
보증조건	제7조 제1항 제4호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보증기간	공급인의 청약서 또는 경우에 따라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장비 인도일 또는 관련 서비스 수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고정되며 연장은 불가능하다.

총칙

본 거래조건은 공급인의 청약서 및 공급인이 작성한 장비, 부품 및 자재 (및/또는 현장서비스) 공급에 관한 계약서에 적용되며 그 일부를 구성한다. 매수인의 일반 구매조건에 포함되거나 매수인의 주문서, 청약서, 수락서 기타 문서 또는 계약에 편입된 매수인의 요구사항에 언급된 조건 등 본 거래조건 외의 어떠한 다른 조건들도 본 거래조건과 상충 또는 보완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공급인이 이에 명시적인 반대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거래조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 거래조건은 현재 매수인과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며, 본 거래조건과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공급인의 청약을 포함한) 기존 계약조항에 우선한다. 단, (i) 공급인이 청약서 또는 적법하게 서명한 문서로써 본 거래조건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수정하고 수정된 해당 조항을 언급한 경우, 또는 (ii) 본 거래조건이 공급인의 청약서 또는 경우에 따라 계약서에 본 거래조건의 조항과 다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본 거래조건은 공급인으로부터 장비, 부품 및 자재 (및/또는 현장서비스)를 공급받는 것을 거래의 주목적으로 하는 매수인과 향후 체결하게 될 모든 계약에도 기본 합의양식으로서 적용된다.

1. 공급대상:

1.1 공급인이 수행할 작업은 공급대상에 한정된다. 매수인은 매수인의 이행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현장서비스:

2.1 현장서비스가 공급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공급인이 필요할 때마다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공급대상 외의 구조물이나 장비에 대한 준비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인은 매수인의 작업을 지체시키거나 방해하는 구조물 등을 서면으로 특정하여 매수인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현장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2.2 공급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간주나 기타 방식에 따른 매수인을 통한 다른 공급인이나 타인의 행위 및/또는 부작위 또는 그들이 수행한 작업이나 공급한 장비, 그들에 대한 보수지급, 복지, 안전장비 또는 작업 안전수단 제공, 그들의 작업 생산성이나 작업기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위에 언급된 타인이나 다른 공급인들이 공급인의 지시나 요구사항을 정확히 준수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매수인은 위에 언급된 타인이나 다른 공급인들의 행위나 부작위로부터 발생한 재산상 손실이나 손해 또는 인체 상해나 사망에 따른 일체의 청구와 책임으로 인하여 공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관련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단, 공급인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야기된 손해는 예외로 한다.

3. 대금지급:

3.1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계약서 서명일에 발행될 청구서를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나머지 70%는 (수리부속의 경우) 매수인이 공급인의 발송 준비완료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또는 (현장서비스의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는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지급은 계약서에 다른 통화가 명시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원화로 할인없이 순현금으로 전자이체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3.2 매수인은 계약대금에 대하여 상계를 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공제나 유보도 할 수 없다. 공급인에게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약대금의 1차 분납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공급대상의 공급에 착수할 의무가 없다.

3.3 지급기일까지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공급인은 별도의 정식 청구를 하지 않고도 미지급된 부분에 비례하여 월 1.5%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공급인은 미지급 사실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때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미지급액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지급받기 전까지 자신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공급인이 지급기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후에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급인은 공급대상 일부의 공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및/또는 이행을 중단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통지서로써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4. 조세:

4.1 계약대금 및 그 밖에 공급인에게 지급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판매세, 사용세, 영업세, 국내소비세 또는 원천세 등) 제반 세금, 각종 과세 또는 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모두 매수인이 부담한다. 단, 공급인의 이익에 대하여 과해지거나 공급대상의 인도에 관한 인코텀스 규정에 따라 공급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세금 기타 부과금은 예외로 한다. 현장서비스 및/또는 계약 자체와 관련하여 공급대상이 설치될 국가의 관계당국이 공급인에게 세금, 과세 또는 과금을 부과한 경우, 매수인은 해당 부과금 전액을 공급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위와 같은 세금, 과세 또는 과금과 관련하여 공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공급인이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공제액 없이 전액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지급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5. 인도/손실 위험/지연:

5.1 공급인은 공급일정에 특정된 날까지 관련 인코텀스 조항에 따라 공급대상을 인도하여야 한다. 관련 인코텀스 조항이 없는 경우, 공급인이 지정한 제조업체의 공장인도조건이 적용되며, 제조업체 공장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인의 공장인도조건이 적용된다. 관련 인코텀스 조항이 공급인에게 인도지 국가로의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공급인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공급인을 지원하여야 한다. (공급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수입절차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급인은 기한연장과 비용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5.2 공급대상의 손실 및 손상위험의 이전은 공급인의 청약일 당시 통용되는 인코텀스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공급인의 공급대상에 현장서비스가 포함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실 및 손해위험이 이전되며, 공급인이 매수인이 이행사항 및/또는 현장에 대한 주의, 관리 및 통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5.3 포장재, 치수 및 총 중량 표시는 근접치로서 공급인이 이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5.4 공급대상이 인도 또는 제공되는 즉시 매수인은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검수하고 지체없이(7일 내에) 공급인에게 하자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공급인은 해당 하자를 교정한다.

5.5 다음과 같은 경우 공급인은 매수인에게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과 기간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i) 이행중단, (ii) 이례적인 악천후, (iii)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인력 또는 상품의 예견불가능한 부족상황, (iv) 매수인(매수인의 책임범위 내에 있는 제3자를 포함)이 또는 그에게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로 공급인의 이행에 지연이나 중단, 장애나 방해 또는 계약위반을 야기한 경우, (v) 그 밖에 본 거래조건이나 계약에 의하여 공급인에게 본 조항에 따른 권리가 부여되는 사건이나 상황. 공급인에게 본 조항에 따른 권리가 부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공급인은 해당 사건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적절한 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5.6 공급인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련 인코덱스 조항에 따른 공급대상의 인도를 2주가 넘게 지체한 경우, 매수인은 지체된 1주일당 계약대금 중 인도가 지체된 공급대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의 0.1%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단, 매수인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청구의사를 적어도 1주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예정액의 총 합계액은 계약대금의 2.5%로 제한된다. 그러나 공급인이 인도하지 않은 공급대상의 비중이 미미한 경우 또는 매수인에게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예정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지급은 매수인이 공급인을 상대로 공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청구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자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수단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지급 외에는 중간 이행기일 또는 중간목표 기타 일정 미준수 등 이행지체에 관한 그 밖의 어떠한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 5.7 불가항력에 의하여 각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이 지체, 중단, 방해 또는 차단되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 각자의 의무이행이 면책된다. 당사자는 불가항력의 발생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6. 소유권:

- 6.1 공급대상에 대한 소유권은 공급인이 계약대금 전액을 확정적으로 수령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7. 보증:

- 7.1 공급대상에 관한 보증:
 - 7.1.1 제7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을 전제로 공급인은 공급대상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보증한다. 보증은 계약보증기간 말일에 만료된다.
 - 7.1.2 공급인은 매수인이 계약보증기간 내에 지체없이 공급인에게 하자를 서면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하자처리책임을 부담한다. 공급인이 하자사실을 계약보증기간 후에 서면통보받은 경우, 공급인은 해당 하자가 잠복성 하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7.1.3 공급인이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하자처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하자의 성질과 교환부품 인도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신속히 해당 하자를 조사 및 교정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에 포함된 장비 및 자재 관련 하자교정은 공급인의 선택에 따라 하자장비 또는 자재의 관련부품을 수리하거나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에 포함된 현장서비스 및 서류 관련 하자교정은 매수인이 하자있는 현장서비스나 서류의 관련부분을 재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정에는 원격 액세스 솔루션(예: IoT 중단 장치 또는 IoT 게이트웨이)을 통해 구현된 수정이 포함될 수 있다. 매수인은 공급인이 하자교정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안전하게 현장에 접근하고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은 결함을 조사하고 수정하기 위해 공급대상 또는 현장에 설치된 장비와 관련하여 매도인에 의해 또는 매도인을 위해 설치된 모든 원격 액세스 기능을 사용할 권리를 매도인에게 부여한다. 교환부품은 계약서에 명시된 인도조건(인코덱스)과 동일한 조건 하에 인도된다. 수리 또는 교환된 하자부품의 분해, 탈거,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사용된 인력 및 장비와 발생한 비용 일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공급인이 위와 같이 하자 교정작업을 수행하였다면 보증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매도인이 공급대상 또는 현장에 설치된 관련 장비에 원격으로 액세스하는 것을 비활성화하거나 달리 제한, 방해 또는 방지하는 경우 매도인의 보증 의무 이행 능력이 손상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매도인의 결함 조사 또는 해결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 매도인은 조사 또는 결함 수정(출장비 발생 포함)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 매도인의 보증 의무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매도인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손상되는 한 무효가 된다.
 - 7.1.4 공급인은 하자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하자처리책임을 부담한다: (a) 일상적인 마모, (b) 정품이 아닌 수리부품 사용, (c) 계약서나 공급인이 작성한 설명서에 기재된 사양을 엄수하지 않은 원료나 소비재, 용품 사용, (d) 상위장비 및/또는 하위장비의 하자, (e) 공급인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동의없이 이루어진 개조, (f) 부식성 또는 마모성 물질 사용, (g) 공급인의 사용설명서나 지침서, 매수인의 자재 품질보증요건 등 적절한 기술적 관행이나 계약서 또는 공급인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들을 엄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급대상을 보관 및 처리 및/또는 공급인의 장비 유지나 작동, (h) 매수인이 자체적으로 충당한 정보, 서비스, 인력, 장비 기타사항, (i) 공급인의 설치감독 및/또는 설치작업을 불허, (j) 공급인의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기타 상태나 상황 (이상을 통틀어 "보증조건"이라 함).
- 7.2 면책 및 책임한도:
 -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i) 공급인은 용도적합성이나 상품성에 관한 보증 등 제7조 제1항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묵시적인, 또는 법령 및 관습에 따른, 또는 그 밖에 매수인에게 유리하거나 유리할 수 있는 일체의 조건, 보증, 보장 및 진술에 대한 책임을 본 조항으로써 배제하고 부인한다. (ii) 제7조 제1항 제3호의 범위 내에 있는 하자 등 공급대상의 하자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수단은 제7조 제1항에 제시된 것으로 한정된다. (iii) 공급인은 제9조 제2항에 기술된 손실이나 손해는 물론 제7조 제1항의 범위 내에 있는 하자 등 보증위반 또는 하자에 의해 야기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8. 기밀과 IP, 소프트웨어, 기술 데이터와 스마트 장비:

- 8.1 매수인은 구두, 전자방식, 서면, (현장 방문·시험·검사 등을 통한) 시각적 방식 등 그 전달수단과 "비밀"("비밀정보")로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급인이 계약에 따라 접근을 허용하거나 제공한 일체의 정보, 도면 및 데이터를 개인 및 비밀정보로 취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 또는 그 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공개하는 경우 및/또는 공인된 증권거래소 또는 관련법령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등 계약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인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비밀정보나 그 세부사항을 발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단, 비밀정보가 본 규정의 위반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매수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이를 공개 및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 본 규정이 해당 비밀정보의 발표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8.2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되거나 이용이 허락된, 또는 공급대상 및 현장서비스에 활용되거나 구현된 장비, 서류 또는 그 밖의 정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인(또는 그 하도급업자)의 전유재산에 해당한다.
- 8.3 공급대상에는 엔지니어링 연구, 프로세스 연구, 세부 가격 제안, 예비 도면, 예비 BOM, 프로세스와 기기 다이어그램 또는 유형 상품(엔지니어링 결과물) 판매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사양 등의 엔지니어링 결과물의 제공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결과물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장비를 조달하기 위해 이러한 엔지니어링 결과물을 활용할 목적으로만 매도인이 완불을 기준으로 매수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다른 공급업체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매수인은 다른 공급업체의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 결과물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이 조항과 상충되는 엔지니어링 결과물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 손실, 손해,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시키고 이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지한다.
- 8.4 이 조항은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제어 시스템 또는 자동화(총칭하여 '소프트웨어')가 매도인의 공급대상에 포함되는 한 적용된다. 소프트웨어에는 매도인이 단독 제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개선 사항, 업그레이드, 관련 문서도 포함된다. 전체 계약금액을 수령하고 매수인이 이 조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도인의 청약에 명시된 요건 내에서 매수인에게

비독점적이고(아래에 명시된 경우 제외) 상품을 운영하기 위한 용도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양도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소프트웨어가 배송된 날 또는 매수인이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1년(소프트웨어 보증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가 계약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고 사용될 경우 매도인의 청약서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사양(있는 경우)에 따라 실질적으로 작동함을 보증한다. 매도인은 소프트웨어가 매수인 또는 제3자의 데이터 보호 또는 IT 보안 요건을 준수함을 보증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보증의 미준수를 발견하고 소프트웨어 보증 기간 내에 이러한 미준수에 대한 상세한 서면 통지(미준수에 대한 설명과 발견에 대한 완전한 정보 포함)를 매도인에게 즉시 제공하여 보증 기간 내에 이러한 미준수에 대한 상세한 서면 통지를 통해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실질적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한다. (i) 소프트웨어의 향후 개정을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수정, 패치 또는 해결 방법을 제공한다. (ii) 소프트웨어 수정에 대한 지침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거나 미준수의 영향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또는 (iii) 매도인의 시설에서 수정되거나 교환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매도인은 소프트웨어의 부적절한 설치 또는 매도인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수정 또는 구성의 경우 이 조항에 명시된 보증에 따른 의무를 지지 않으며 매수인이 제공한 소프트웨어 또는 인터페이스로 인해 발생하는 미준수에 대해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각각의 경우에 매수인은 결과적인 손실, 부상 또는 손상으로부터 매도인을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 매도인은 제3자로부터 취득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매도인의 의무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미준수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획득한 모든 보증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에는 있는 그대로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매도인에게는 유지 보수, 개선 또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매도인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저작권, 상표, 특허, 기타 지적 재산권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되거나 전송되거나 처리될 수 있는 매수인 생성 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를 보유한다. 소프트웨어는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와, 매도인과 제3자 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단, 매도인의 사전 동의 없이 상품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이 소프트웨어(와 함께 부여된 라이선스)를 양도할 수 있다. 매수인은 소프트웨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수정 또는 디컴파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소스 코드를 찾거나 식별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소프트웨어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S-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한, 이 조항에 반대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이 적용된다. 매도인은 해당 OS-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에 근거하여 OS-소프트웨어를 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조건은 매수인이 OS-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율한다(보증과 책임과 관련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포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와 구체적은 위에 독점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8.5 매도인은 기업 가치 사슬(범위 3) 회계 및 보고 기준('GHG 프로토콜')에 따라 감사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공개적으로 공개한다. 판매된 제품의 사용 단계(범위 3.11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보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도인은 고객의 특정 에너지 그리드 믹스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특정 에너지 그리드 믹스 즉, 해당 정보가 수집되고 추적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판매 제품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매도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매수인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매도인이 연간 지속 가능성 보고와 감사를 위해 이 정보를 집계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이 정보는 기밀로 유지된다.
- 8.6 매도인의 공급 범위에 연결 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GEA 그룹사는 각각 공급대상에 제공,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보증과 기타 의무 이행, 공급대상(연결된 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 포함)과 설치된 장비의 문제 해결/모니터링/기능 개선/추가적인 개발, 매수인에게 공급대상과 설치된 장비에 관한 정보와 제품 지원 제공, 공급대상과 설치된 장비에 대한 벤치마크와 최적화 잠재력 수립 그리고 공급대상과 설치된 장비 최적화, 장비/소프트웨어/클라우드 기반 솔루션/프로세스/서비스의 개발/설계/엔지니어링/제조/공급/자동화/개선/업데이트/모니터링 또는 서비스 작업, 알고리즘/통계 분석/인공지능 솔루션 생성과 수정, 프로젝트 수행과 유사 기능 최적화, 마케팅과 영업 활동 지원, 파생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포함한 해당 파생 데이터를 상업용으로 생성과 사용 중 하나 이상의 목적으로, 연결 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에서 GEA Cloud에 전송되는 기술 데이터를 생성, 수집, 처리, 분석, 저장, 집계, 사용하는 영구적이고 전 세계적이며 취소할 수 없고 비독점적이며 양도 가능하고 재라이선스가 가능하며 로열티가 없는 권리를 가진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공급대상과 현장의 보조 장비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연결된 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파생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모든 파생 데이터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이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한다.
- 8.7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 계약에 따른 보증과 기타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해당 기술 데이터를 GEA Cloud에 전송한다. 또한 GEA 그룹사의 서면 요청에 따라 매수인은 해당 회사가 공급 범위, 설치된 작업, 관련 기술 데이터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된 자동화, 소프트웨어, 제어 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량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수행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설치 중에 공급 범위(또는 그 일부)를 또는 나중에 (GEA 그룹사가 요청한 경우) 그리고 설치된 작업(GEA 그룹사가 요청한 경우)을 매도인의 클라우드 또는 IT 환경 또는 기타 유사 솔루션에 연결하도록 하거나 (동일한 경우) 매수인이 연결한다. 매수인은 IoT 중단 장치 또는 IoT 게이트웨이에 대한 인터넷 또는 기타 연결에 매도인이 원격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완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고, 연결이 때때로 매도인이 발표하거나 해당 규정이나 표준에서 권장하거나 요구하는 해당 요건(예: 구성, 보안 등)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이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매도인에게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할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보증 조건에 따라 공급 범위 또는 설치된 작업에 대한 디지털 솔루션을 수시로 제공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 조항은 기술 데이터 또는 파생 데이터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부담하는 보증 또는 기타 유사 의무를 이어지지 않는다. 매도인은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저장된 기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삭제는 해당 법률에 따라야 한다.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이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매도인이 기술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ii) 매도인의 영업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 iii) 공급대상의 보안이나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 또는 iii)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제품, 물질 또는 프로세스의 테스트와 관련된 데이터가 공개될 수 있다.
- 8.8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GEA 그룹사'는 매도인과 그 계열사를 의미한다. '연결 제품'은 구성 요소(예: IoT Edge Device 또는 IoT 게이트웨이), 운영 체제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기술 데이터를 획득, 생성 그리고/또는 수집하거나 매수인과 매도인이 이러한 데이터를 매도인의 클라우드나 IT 환경 또는 기타 유사한 솔루션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의 물리적 제품을 의미한다. '설치된 장비'란 공급대상이 관련되거나 연결된 현장의 장비, 자동화, 소프트웨어, 제어 시스템을 의미한다. '관련 서비스'란 소프트웨어 또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결된 제품 또는 설치된 장비가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급대상 또는 설치된 장비의 기능을 추가, 모니터링, 업데이트, 최적화, 수정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공급대상 또는 설치된 장비에 연결된 경우 GEA 그룹사 또는 이를 대신하는 제3자가 기술 데이터를 획득, 생성 또는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기술 데이터'란 연결된 제품의 조건, 작동, 효율, 생산성, 가용성, 유지보수, 상태, 오작동 또는 최적화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원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메타데이터는 물론, 연결된 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여 생성된 원시 제품 데이터를 의미한다. '파생 데이터'란 i) 알고리즘 또는 독점 소프트웨어의 적용을 통해 파생되는 통계적 또는 기타 분석과 데이터를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GEA 그룹사(또는 이를 대신하는 제3자)가 기술 데이터로부터 파생시키는 모든 데이터 또는 정보, ii) 센서 용량 또는 기타 유사한 수단 또는 방법을 통해 파생되는 모든 데이터 또는 정보, iii) 기술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와 함께 통합되는 모든 데이터(단, 이러한 통합 데이터는 이 집속에 따라 수집된 기술 데이터를 식별하거나 제3자가 통합 데이터 세트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파생시킬 수 없음)를 의미한다. 기술 데이터에는 파생 데이터는 일체 포함되지 않는다.

9. 구제수단 및 책임제한:

9.1 배타적 구제수단: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매수인의 권리 및 구제수단은 (해지, 계약상 또는 법령상 의무위반, 과실 또는 기타 불법행위, 무과실책임, 배상보장, 취소/철회 등)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건, 상황이나 이론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비용지급 또는 비용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대금감액, 보상 또는 시정조치, 해지 등 그 방식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정된다.

9.2 특정 손해배상의 배제:

본 조항에 반하는 다른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을 제외하면 본 규정은 유효하다:

- (a) 계약서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예정
- (b) 관련법에 의해 금지되는 공급인의 책임 배제(이 경우,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급인의 책임을 제한함)

공급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수익이나 이익의 손실, 기회, 생산 또는 계약의 상실, 사용기능의 상실, 고경비, 원료, 원자재, 용품 또는 제품의 손실 또는 손상, 공장의 유희 또는 가동 지연상태, 영업권의 상실, 고객이나 제3자가 매수인에게 부과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또는 위약금, 제3자에 대한 매수인의 계약상 책임, 리콜 비용, 매수인이 지급하게 될 손해배상금, 과태료 또는 벌금, 기타 재정적 또는 경제적 손실이나 손해 등; 이 때 각각의 손실이나 손해가 직접적, 결과적 또는 간접적인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와 결과적, 간접적, 특별, 부수적, 징벌적 또는 전형적인지 여부 등 그 발생원인을 불문한다.

9.3 총 책임한도:

본 조항에 반하는 다른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의해 금지되는 공급인의 책임 배제(이 경우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급인의 책임을 제한함)를 제외하면, 계약상 또는 계약과 관련한 공급인의 매수인에 대한 총 책임한도는, (해지규정 등) 계약상 또는 법령상 의무위반, 과실 또는 기타 불법행위, 무과실책임, 계약대금감액 또는 상환, 해지, 취소/철회, 보상 또는 시정조치 등 책임의 발생경위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인이 수령한 계약대금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9.4 계약의 마지막 문장에 제시된 단서를 제외하고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계약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절차에 있어 사실상 공급인이 자신의 계약상 또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행을 완료하였고, 계약상 의무에 따라 공급대상을 공급하였으며, 공급대상에 대한 하자 일체에 대한 보상조치를 취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계약보증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약 및 공급대상의 사용에 따른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매수인의 공급인을 상대로 한 일체의 공개적, 비공개적 청구와 권리, 청구원인 및/또는 구제수단은 차단되고 소멸한다. 단, 본 조항은 사기 사건 또는 보증기간 내에 법적절차가 개시되고 공급인이 이에 대한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인·허가 / 안전:

10.1 매수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i) 현장, 공급대상 및 관련 장비, 공장, 시설 또는 설비의 소유, 설치, 시험, 시운전, 가동 및 유지와 현장서비스 이행 등 관련사항에 대한 일체의 승인 및 인·허가, (ii) 제반 현장인력의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한 상시 안전 작업환경 유지, 공급대상에 대한 안전한 상시 접근수단 제공, 관련 지침, 법령, 규정, 규제, 규약 및 기준과 공급인이 제공하는 용·유지 편람 및 지침서에 따른 안전한 현장활동 수행, (iii) 공급대상의 일부로 제공된 안전장치, 보호대 또는 경고문의 제거 또는 변경 금지. 매수인은 본 조항에 열거된 의무를 엄수하지 않을 경우 재산상 손실이나 손해 또는 인체 상해나 사망에서 비롯된 일체의 청구와 책임으로 인하여 공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관련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단, 공급인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야기된 손해는 예외로 한다.

11. 수출관리:

- 11.1 매수인은 공급인이 제공할 상품이 수출관리대상이거나 수출관리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수출제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수출제한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인은 수출허가 취득에 필요한 비용 및 경비 등 계약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추가비용 및 경비 일체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매수인은 최종소비자 인증 등 수출허가 취득 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지체없이 공급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수출허가 취득이 크게 지체되거나, 허가가 취소되거나 계약이행이 금지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급인은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1.2 수출허가가 거부 또는 취소되거나, 수출금지령에 따라 계약이행이 금지되거나, 그 밖의 수출제한상황으로 인하여 공급인이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일부라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공급인은 자신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즉시 면제받는다. 수출제한상황이 발생하여 공급인의 공급업자거나 하도급업자들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공급인이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에도 위와 같다. 공급인은 수출제한상황과 관련된 지체나 손실 또는 손해에 관한 청구에 있어 매수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11.3 제11조 제2항의 상황에서 매수인에게 수출관리규제 및/또는 수출허가 취득 실패 또는 수출금지령에 의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통지한 공급인은 청약을 취소할 수 있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1주일 전에 해지의사를 서면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1.4 매수인은 공급인이 제공할 상품과 관련된 수출관리규제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적정 인가없이 상품을 판매, 임대, 양도 또는 제3자에게 행위 등 자신 또는 공급인의 합리적인 판단에 비추어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조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공급인에 대하여 자신이 위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거나 그 위반과 관련된 청구, 진행중인 소송, 벌금, 비용, 손실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2. 정보 처리:

12.1 매수인은 공급인과의 거래관계상 자신이 공개한 개인정보 및 기타 정보를 공급인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집, 처리 및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 (1) (청구서 작성 및 처리를 포함한) 매수인과의 계약의 관리 및 이행, (2) 매수인에 대한 추가 상품 및 서비스 광고 및/또는 제공, (3) 고객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매수인과의 거래관계 관리. 이러한 정보에는 매수인의 고용인들이나 수입인들에 관한 정보, 특히 그들의 성명, 직위, 회사, 회사 내 직무, (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우편주소 등) 업무상 연락처, 발주이력, 분쟁이력(예: 하자처리 요구 또는 분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급인은 위와 같은 목적범위 내에서 (i) 공급인 자신이 직접 및/또는 계열사나 기타 위주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ii) 유럽연합(EU)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외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해당 정보를 수집, 처리 및 사용할 수 있다. 매수인은 (필요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서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해) 공급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13. 기타:

13.1 계약조항들 중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강제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들은 그와 관계없이 유효하고 강제력이 있다. 당사자들은 무효가 되거나 강제력을 상실한 규정을 이에 최대한 근접한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다른 유효한 조항으로 대체한다.

- 13.2 본 거래조건에 나타난 조항 제목이나 그 밖의 표제는 참고용일 뿐, 해당 조항들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수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문맥에 따라 복수를 의미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이와 같다. 계약서가 매수인이나 공급인 중 일방 당사자의 표준 또는 통상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거나, 계약서 및/또는 그 특정 해설부분이나 조항, 별첨, 별지 등이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이유로 계약서를 매수인이나 공급인 중 일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13.3 계약서는 관련사항에 관한 공급인과 매수인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명시한 것으로서, 그들이 이에 앞서 합의하거나 협의한 일체의 사항을 대체한다. 공급인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일체의 구두진술, 보증, 약속 기타 진술사항과 계약일 이전에 전달 또는 교환된 (공급인의 브로셔나 관측자료 등) 일체의 문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이로부터 배제된다는 점을 본 조항으로써 명확히 한다. 매수인은 계약체결 당시 위와 같은 진술, 보증, 약속이나 문서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 13.4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공급인은 매수인의 동의없이도 자신의 판단에 비추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계약상 의무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4. 분쟁 / 준거법:

- 14.1 계약의 준부와 그 효력 또는 해지에 관한 문제 등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적으로 관할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단, 공급인은 관할이 인정되는 다른 법원에도 매수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실체법으로 하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록 A

특별 수출 통제 규정

독일 뒤셀도르프에 등록된 GEA Group AG("GEA")에 속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법인 또는 영구 시설("계약자")이 제공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받는 모든 상품 및/또는 서비스(소프트웨어 포함)의 수령인("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수출 통제 요건입니다(해당되는 경우):

계약자의 최종 모회사인 GEA는 독일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GEA의 모든 그룹 회사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유럽 연합에서 제정된 모든 수출 통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사회 규정(EU) 제 833/2014호 12g조를 포함하여 독일에서 시행 중인 모든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계약자가 제공하는 공급/작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국제법상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독일에서 시행 중인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다음 조항을 수락하며 다른 곳에서 합의된 모든 상충되는 조항을 대체하고 이를 대체합니다:

1. 구매자가 계약자로부터 위에 명시된 수출 통제 규정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이사회 규정(EU) 833/2014호 부속서 XI, XX, XXXV 또는 XL 또는 기타 부속서에 나열된 상품 또는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구매자는 그러한 상품을 러시아 연방에 판매하거나 러시아 연방에서 사용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해서는 안 됩니다. 구매자가 이사회 규정(EU) No 765/2006의 부속서 XVI, XVII, XVIII 또는 XXX 또는 위에 지정된 수출 통제 규정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기타 부속서에 나열된 상품 또는 기술을 계약자로부터 획득한 경우,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상품을 벨로루시로 또는 벨로루시에서 사용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 수출 또는 재수출;
2. 구매자는 가능한 리셀러를 포함하여 상업적 사슬의 하위에 있는 제3자에 의해 제1항의 목적이 좌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 구매자는 리셀러를 포함하여 상업적 체인에서 더 아래 단계에 있는 제3자가 제1항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4. 항목 1, 2 또는 3의 위반은 계약의 필수 요소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계약자는 계약의 해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구제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구매자는 제1항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는 제3자의 관련 활동을 포함하여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구매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 준수에 관한 정보를 단순 정보 요청 후 2주 이내에 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상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수출 통제 이벤트에 해당합니다.